제 16 장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 조【 목적 】

이 규정은 본 시설과 입소어르신(또는 보호자) 간의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에 있어 상호 권리와 의무, 이용조건, 계약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계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서비스 이용자 】

서비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이용이 가능한 등급(1~5등급)을 받은 자 중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입소 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의거 적용한다.[1)]

②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심신에 장애가 있는 자

③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제 3 조【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

본 시설의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입소정원 : 90명(치매전담실: 20명 / 일반요양실: 70명)

② 모집방법 :

1. 기관 홈페이지, 군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2. 각종 언론사(잡지, 신문, 인터넷뉴스) 및 SNS, 유튜브 미디어 홍보 활용
3. 입소자(보호자)들의 구두 등을 통하여 모집
4. 현수막, 전단지, 홍보물 제작 등 적극 활용
5. 정원 초과 시에는 입소 대기자 명단을 관리, 이용자 모집에 반영한다.

제 4 조【 제출서류 】

본 시설의 입소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① 입소이용신청서 1부

② 장기요양인증서 사본 1부

③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⑥ 건강진단서 1부 (감염성 질환 여부 확인서류)

⑦ 입소자, 보호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

1)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⑧ 병명이 명기된 진단서 1부
⑨ 기관 연계 기록지 (장기요양기관 전원시)
⑩ 약물 복용시 의사처방전 및 복용중인 약
※ 대리처방 요청시 진료비 및 약제비 결제전용 체크카드

제 5 조【 이용계약내용 】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입소계약은 입소당사자(이하 이용자"갑"이라 한다)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진도군공립노인요양원(이하 제공자 "을"이라 한다)와의 계약을 말한다.

①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노인장기요양인정 등급 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요양인정 등급의 재판정이 입소가능 등급일 경우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 간의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③ 계약대상자 - "갑"이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갑"이 고령과 심신의 허약으로 인해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는 친족으로 한다. 친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배우자
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손자, 손녀)
다. 직계혈족의 배우자(자부, 사위, 손자부, 손녀사위)
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의 군수, 면장, 이장을 통하여 입소 계약이 가능하다.

④ 입소보증금 -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⑤ 기타 계약 세부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의거 적용한다.

※ 등급판정 절차

제 6 조【 시설이용료 】

시설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가 있다.

①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부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면제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경감대상자(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부담금 60% 또는 40% 경감

② 요양급여비용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장기요양 등 급	1일 급여	월 급여액 (30일기준)	법정 본인일부부담금 (30일 기준)			
			일 반 (20% 부담)	감경대상자		기 초 수급자
				(12% 부담)	(8% 부담)	
1등급	93,070	2,792,100	558,420	335,050	223,360	면제
2등급	86,340	2,590,200	518,040	310,820	207,210	
3,4,5등급 (시설급여)	81,540	2,446,200	489,240	293,540	195,690	

※ 등급별 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매년 고시금액)에 의거 산정한다.

③ 비급여비용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구 분	1일 금액	월 기준금액(30일 기준)	비 고
식 대(간식비 1회 포함)	7,500원 (1식 2,500원)	225,000원	물가변동에 따라 조정 가능
상급병실이용료(2인실)	3,500원	105,000원	
상급병실이용료(1인실)	10,000원	300,000원	
기 타	진료비, 약제비 별도 실비 청구		

- 계약의사 진료비

구 분	진료비 (1회당)	본인부담비용		
		일반(20%)	경감(12%)	경감(8%)
초 진	18,840	3,760	2,260	1,500
재 진	13,370	2,670	1,600	1,060

※ 계약의사 진료비는 시설에서 수납 후 촉탁의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④ 서비스의 내용

-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프로그램, 재활 및 운동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

⑤ 서비스 내용에 따른 비용부담

- 위 ④ 서비스 내용에 따른 비용부담은 별도로 없음

⑥ 이용료 등 수납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 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따라 해당 월 이용료를 익월 후불로 청구하며, 청구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지정한 은행계좌에 납부한다.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입소기간 중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원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하는 경우 최대 10일까지는 해당 요양 등급별 1일당 수가 중 본인부담금의 50%를 납부하여야 한다.(해당 일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다.)

⑦ 서비스 제공의 기본 원칙

■ (인권보호) 성, 연령, 건강 상태 및 장애, 경제 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하여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 (자기결정)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사례관리)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비밀보장)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를 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 (사회통합) 수급자와 가족, 친구 등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급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

■ (전문서비스와 효율성) 충분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부당청구 금지)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 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알선행위 등의 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면회

■ 면회는 수급자를 찾아오신 모든 분들에게 적용된다.

1) 면회 시간은 09:30부터 17:30까지로 제한한다.

2) 면회는 생활실에서 가능하나 많은 인원은 면회실에서 실시한다.

3) 면회 시에는 생활실 내부로의 음식물 반입을 엄격히 금한다. 단 면회실 및 식당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선택적으로 허용한다.

⑨ 외출 및 외박

■ 외출 및 외박 시는 항상 다음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외출을 원할 경우 본원에 외출의 목적과 장소, 연락처를 명확히 알리고 외출대장을 작성 후 어르신을 보호자에게 인도한다.

2) 외박을 원할 경우 본원에 외박의 목적과 기간, 장소, 연락처를 알리고 외박대장을 작성 후 어르신을 보호자에게 인도한다.

3) 본원은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외출·외박을 제한할 수 있다.

제 7 조【 시설이용료 변경에 관한 방법 및 절차 】

시설이용료가 변경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①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 장기요양인정등급의 변경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가의 변경

■ 식재료비의 인상 등의 비급여에 해당하는 항목 또는 제반 비용의 증감이 있을 때

■ 프로그램 진행비 등 기관에서 정한 기타 사항 비급여 신설 및 비용 변경 가능

② 이용료의 개정

■ 노인장기요양급여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③ 이용료 변경에 관한 방법

■ 비급여 부분에서 이용료 변경 시 운영위원회에 의결을 통해서 이용료 인상·인하 가능

■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급여 부분 비용 신설 가능(관련법에서 규정한 요양급여 수가 제외)

④ 이용료 변경에 관한 절차

■ 이용료 변경(사안에 따라 행정협의회 의결)

■ 이용료 변경 시 입소자 및 보호자 변경 내용 구두 혹은 서면으로 통보

■ 입소자 및 보호자 이용료 납부

제 8 조【 신원인수인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 인수인의 의무)신원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시키든지 시설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② (신원 인수인의 권리)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 9 조【 입소자 및 보호자의 의무 】

입소자・입소자 보호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입소자의 의무

■ 월 이용료 지급의무

■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의무

■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② 입소보호자의 의무

■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서비스이용자의 병원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 10 조【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요양보호 대상자들의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질 높은 요양 및 신체수발 서비스 제공의 의무
② 요양보호 대상자의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 조성
③ 요양보호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제 11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본 원은 입소이용자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 입금으로 반환한다.

제 12 조【 특별한 보호 】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과잉 또는 적절 행동과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기준으로 나누며 절차 및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소 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 행동으로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을 경우, 대체할 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상황이 긴급할 경우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신체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신체적 구속사유에 대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으며 구속사유에 대한 기록을 작성한다.

■ 신체적 구속 내용에는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 억제대,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 등을 위한 신체일부 구속 포함된다.
■ 집중관찰 • 전문의료 활동이 필요한 요양보호 대상자를 위해 집중요양실 등 특별침실을 마련하여 제공한다.
■ 호스피스 요양보호가 필요한 경우 격리 등의 집중 요양이 필요한 환경을 제공한다.
■ 대상자의 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특별보호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부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한다.

② 특별한 보호에 대한 비용

■ 기타 개별적인 집중요양보호를 위한 서비스 비용은 별도로 발생되지 않지만 요양보호를 위한 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할 수 있다. 단 병원에서 입원한 경우는 입원

비는 입소자(보호자)가 부담한다.

제 13 조【 의료서비스 】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인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간호(조무)사는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을 한다.
- 입소자의 건강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입소자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간호(조무)사는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촉탁의가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협조한다.
-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의료협약기관

- 진도군공립노인요양원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응급 이송시스템을 갖추도록 한다.
-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2주에 1회 이상 본 기관을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병원진료

- 입소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입소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 또는 그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의 진료비와 부가서비스경비(교통비, 간병 등)는 본인 및 보호자에게 별도 징수한다.

④ 응급상황에 따른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소방서 및 1399(응급의료정보센터/WWW.1399.or.kr)에 자문을 얻어 응급처치 시행 후 신속하게 응급이송차량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며, 이후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본 시설 직원이 병원 동행하여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⑤ 전원조치

- 요양보호 대상자의 질환의 증상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 조치 할 수 있다.

제 14 조【 계약의 해지 】

계약해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서비스 이용자가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1회 연체 시 : 이용료 납부 사실 통보
-2회 연체 시 : 이용료 납부 독촉
-3회 연체 시 : 계약 해지
④ 서비스 이용자가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서비스 이용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일 수에 대해(국고보조금 포함)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음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⑧ 기타 시설이나 혹은 타 어르신에게 심각한 손해나 위협을 초래할 경우

제 15 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과 면책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상책임

① 서비스제공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어르신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② 서비스제공 직원이 고의로 어르신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배상하도록 한다.
③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면책범위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또는 갑작스런 돌연사를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시설의 규정을 어기고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인식이 없는 노인의 경우 예외)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나 화재를 당했거나 사고나 사망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⑤ 입소자 또는 방문객이 소지 중인 현금, 유가증권, 기타 귀중품 등은 본 요양원에 보관을 의뢰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분실, 훼손되었을 때
⑥ 지극히 일상적이고 의무적인 케어서비스 중에 자연스런 노화의 과정이나 그 결과로 발생된 골절 등의 사고 등은 요양보호 대상자 및 보호자가 진도군공립노인요양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 16 조【 금지행위 】

다른 거주자와 직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한다.

① 다른 거주자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② 정신적, 정서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③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위

④ 기타 공동생활에 위해가 되는 행위

⑤ 음식물등 반입금지물로 인해 다른 어르신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행위

제 17 조【 입소물품 】

시설이용자는 시설 입소 시 필요한 개인물품을 공동생활에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유할 수 있다. 반입 시 본원과 반드시 협의하여 반입 사용하여야 한다.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 전기제품 및 기타 위험물품(망치, 칼, 가위, 바늘 등)은 소유할 수 없다.

제 18 조【 시설물관리 】

시설물 관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① 벽, 기둥, 바닥, 보 등 시설물의 이상 여부를 점검한다.

② 내장재의 불연화 여부를 확인하고 비상구의 출입 여부를 확인한다.

③ 정기적으로 시설의 원내•외 시설물관리 점검하고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④ 시설의 쾌적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수시로 소독 등이 이뤄지도록 한다.

⑤ 명시되지 않은 시설물도 항상 안전 점검이 이뤄지도록 하며 시설물 위해요소 발견 시 즉각 조치하도록 한다.

제 19 조【 시설물 주의사항 】

본 시설의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모든 시설물 사용 시 안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한다.

② 심야 보일러설비(1층 보일러실), 기계설비(옥상 변전실, 소방용수설비, 물탱크 설비) 및, 정화시설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지하 1층은 위험한 장소이므로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③ 입소자는 본 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및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 20 조【 안전·보건 관련 업무지침 마련 】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 지침을 작성하여 상시 비치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한다.

① (규칙 준수) 근로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따를 것

② (재해 방지) 항상 직장의 정리 정돈을 하고 재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할 것

③ (작업 준수) 업무 전·후에는 사용 장치, 기계 기구의 점검을 하고, 단 업무 중에는 소정 작업 동작, 공정 방법을 엄수 할 것

④ (시설 변경 금지) 안전장치, 소화 설비, 위생 설비, 기타 위생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허가 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⑤ (화기 엄금) 정하여진 장소 이외에서는 허가 없이 화기를 사용하지 말 것.
⑥ (청 결) 항상 작업장을 청결히 하고, 폐기물을 일정한 장소에 분리, 처리 할 것
⑦ (후 생) 진도군공립노인요양원에서 행하는 건강진단, 전염병검사, 예방주사 등은 꼭 받을 것
⑧ 급여제공지침 13개 항목 작성 상시 비치

제 21 조【 퇴소절차 】

퇴소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진도군공립노인요양원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원에 제출한다.
② 입소자 및 보호자는 입소자의 사유 물품을 인수하여 퇴거한다.
③ 본 원은 입소이용자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 계좌 입금으로 반환한다.
④ 입소보증금은 입소 시 보증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은 해당사항이 없다.

제 22 조【 장　례 】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죽음을 앞둔 어르신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간호를 제공함으로써 임종환자가 편안하게 죽음을 맞도록 돕는 호스피스 케어를 제공한다.
② 무연고자 원 내 사망 시, 보호자의 요청 시에는 장례식장 연계 및 장례절차 상담을 제공한다.
③ 연고가 있으신 어르신의 경우 별세 후 고인의 유품이나 유언은 연고자와 상의하여 처리하며 무연고 어르신의 경우는 통상적 관례에 따라 사무국장과 담당 사회복지사가 처리한다.
④ 노인복지법 제48조 유류금품의 처분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 23 조【 기록보존 】

시설의 입·퇴소자에 대한 모든 기록을 철저히 보존해야 한다.
① 입·퇴소 시 구비서류
② 입소자관리카드 및 기록
③ 입소계약서, 입소서약서
④ 퇴소신청서
⑤ 사망진단서
⑥ 유품인수확인서

부 칙

제 1 조【 시 행 일 】
본 규정은 법인이사회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규정 】
본 규정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 기타사항 】
본 규정에 수록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붙임 1호)

어르신 생 활 지 침 서

□ 어르신 보호 요령 및 자세

1. 공손할 것
2. 어르신과 어르신이 처해 있는 환경 그리고 어르신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이해할 것
3. 어르신의 특성을 고려한 기대와 요구할 것
4. 동료들, 상사들과의 협조 관계를 활용할 것
5. 어르신 보호에 있어서 강한 책임 의식을 가질 것
6. 어르신을 사랑으로 대할 것
7. 어르신의 잔존능력의 유지개발에 담당 요양보호사로서 책임감을 가지며 일선 지도원으로서 책임을 질 것

□ 생활지침 내용

1. 숙 소

① 숙소는 4인 1실을 기본으로 하고 주거형태는 어르신의 신체적 상태에 따라 온돌식 또는 침대를 놓을 수 있다.

② (집중요양실의 경우) 2인실을 기본으로 하지만 사안에 따라 1인실로 할 수 있으며, 주거형태는 침대식으로 한다.

2. 식 사

① 식사는 1일 3식의 영양이 균형적이고 다양한 식단을 기본으로 하는 식사를 제공하며 어르신의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또는 질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식을 제공한다.

② 식사 기간은 조식 8:00, 중식 12:00, 석식 17:00으로 한다.

3. 생활편의 서비스

① 외출 차량 이용 : 병원 외래 및 외출 시에 차량서비스를 받는다.

② 목욕실 이용: 월, 화, 수, 목, 금 매일(평일) 각 층별로 2실씩 어르신들을 위해 직원의 보호하에 목욕을 실시하여 개인위생에 힘쓴다. 단 간단한 반신욕은 항시 제공한다.

③ 이.미용 서비스 이용: 자원봉사자 및 직원이 제공하는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세탁실 이용: 어르신 개인 신변처리를 위한 모든 세탁물에 대하여 위생원에 의뢰하여 세탁한다.

⑤ 생필품 지급: 어르신들에게 생필품을 지급한다. 세안비누, 치약, 칫솔, 휴지와 같은 개인용품을 비롯한 생필품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급하며 개인 기호에 따른 생필품은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⑥ 업무 대행 지원 서비스: 은행업무, 우체국 업무, 관공서 업무 등 외부 활동을 대행, 지원하는 서비스

를 이용한다.

4. 문화 및 여가 생활 서비스

① 신앙지도 및 상담
기독교 성훈에 입각하여 공동체 생활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을 심어주며 말씀 생활을 통해 심리적, 정신적 안정에 기여한다.

② 노인 활동 및 레크리에이션: 요일별 제공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여가를 유익하고 즐겁게 노후생활을 향유한다.

③ 절기행사, 생일잔치, 야외 나들이 활동: 절기별, 월별로 제공되는 행사에 참여하여 자칫 무료할 수 있는 원내 생활에 활력소를 제공받는다.

5. 노인문제 상담 서비스

원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에게 어르신의 신체적, 정신적 문제 또는 생활 전반에 관한 문제를 상담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6. 의료서비스

다음과 같이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에 힘쓴다.

① 응급 시를 대비하여 24시간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가 상주하여야 한다.

② 연 1회 이상 건강 검진을 실시한다.

③ 건강 상담, 건강강좌, 운동처방을 실시한다.

④ 2주에 1회 이상 계약의사 진료 서비스를 실시한다.

⑤ 건강 악화 시: 질병이 발생했거나 노화로 인해 심신이 허약해지신 어르신은 특별침실을 이용하거나 병원에서 치료하실 수 있도록 한다.

7. 재활 서비스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치료 레크리에이션, 노인 건강 체크 등의 재활 서비스를 이용함으로 어르신의 잔존 능력의 감퇴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다.

8. 안전 및 응급 서비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소방안전교육 등의 직무교육을 통해 불의의 사고나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 직원 준수사항

① 직원의 복장 및 용모는 사치성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적이며, 단정한 복장 및 용모를 항시 유지하여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근무 교대 시 복지팀(요양보호사) 팀장은 어르신에 관한 업무를 정확하게 인수인계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③ 입소자에게 가정의 안락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직원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혹은 천성에 따라, 혹은 일반적인 것에 위배 되는 자아도취성에 빠져 어르신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전체의 분위기를 헤쳐서는 안 됨을 명심하여야 한다.

⑤ 담당 요양보호사로서의 침착성과 자제력, 유연성을 발휘하여야 하며, 절대 어르신에게 군림하는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

⑥ 직원들 간의 화목과 협력을 통해 모범을 보이며, 어르신 보호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⑦ 직원은 어르신들에게 모범적인 행동을 요구하기에 앞서 스스로가 보다 모범적인 생활과 모범적인 환경 유지를 해야 한다.

(붙임 2호)

어르신 및 보호자 권리 사항

▣ 어르신

1. 어르신은 귀중한 생명으로서 존중받고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

2.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3.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4. 개인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5. 공동체 생활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6. 자유롭게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시설 내의 사회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8.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9. 시설 내외의 문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문제해결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연 2회 실시되는 운영간담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운영간담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 2항에 의거한다.

▣ 연고자(보호자)

1. 본 시설 어르신의 연고자는 사전에 허락된 범위 내에서 어르신을 만날 수 있으며, 본 시설을 방문하거나 집으로 일시 데려갈 수 있다.

2. 본 시설 어르신의 연고자는 법적 한도 내에서 친고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3. 본 시설 어르신의 연고자는 어르신이 본 시설 생활을 보다 안락하고 효율적으로 하시게 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붙임 3호)

서 약 서

본인은 진도군공립노인요양원의 직원으로서 시설의 설립목적에 따라 어르신을 보호하며, 어르신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행하지 않을 것과 **이를 어겼을 경우 어떠한 처벌이라도 받을 것과 기관에 발생되는 모든 피해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행위

(1) 폭력행위

① 어르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2) 정신적, 정서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① 어르신의 의지가 아닌 강제적으로 행하는 행위
② 방에 감금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③ 급식을 이유 없이 중지하는 행위
④ 어르신들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기저귀 교환 시나 목욕 시 타인이 보는 앞에서 행하는 등의 행위)
⑤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행위 등

(3) 성적 학대

① 성희롱 및 성폭력을 행하는 어떠한 행위

2. 안전사고

① 어르신을 방치함으로서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경우
② 창틀, 계단, 문사이 등에서의 방치된 사고 등

3. 기 타

① 어르신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년 월 일

서약자 직 책 : 성 명 : (인)

(붙임 4호)

서 약 서

본인은 진도군공립노인요양원의 입소자로서 시설의 운영 방침에 따라 생활하며 안락한 공동체 생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행하지 않을 것과 이를 어겼을 경우 내려지는 어떠한 조치라도 수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행위

① 폭력행위
- 타 입소자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② 정신적 정서적으로 유해한 행위
-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행위

③ 성적 학대 행위
-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행하는 어떠한 행위

2. 안전사고

① 무리한 전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
② 발화성 물질의 취급 부주의에서 오는 화재
③ 부적절한 생활 도구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유발 행위

3.기타 공동생활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① 흡연, 술로 인한 타인에게 위해가 되는 행위 등

년 월 일

서약자 성 명: (인)